

2024 하반기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



전라남도
JeollaNamdo
[농식품유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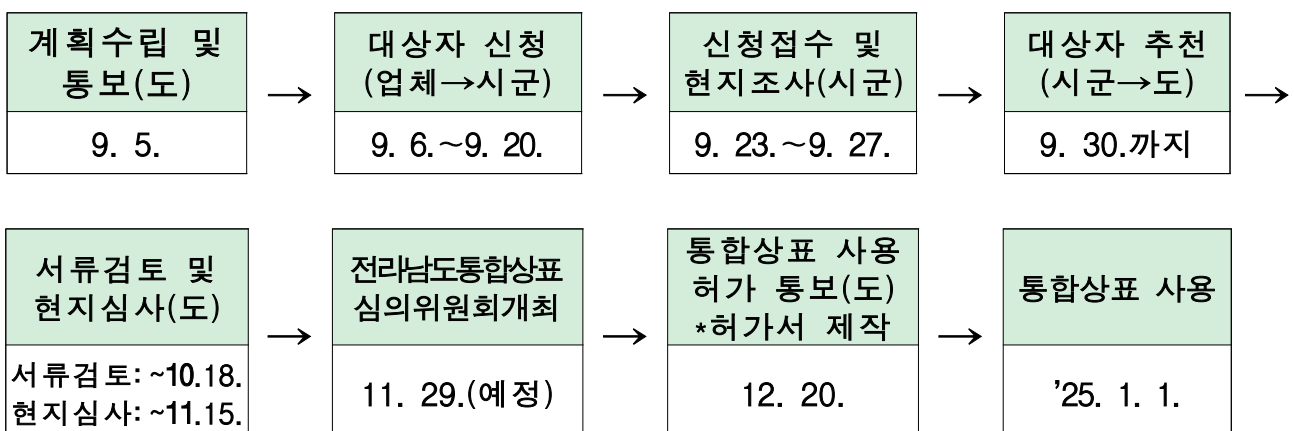
'24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도지사품질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근거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4. 9. 6.(금) ~ 9. 20.(금)
 - 대상품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73품목(붙임3)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 제조가공업체의 경우는 도내 소재 원칙
- 인증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추진절차



□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자 신청 (업체 → 시·군)

- 신청기간 : 2024. 9. 6.(금) ~ 9. 20.(금)
- 대 상 : 신규·품목추가 희망업체
- 신청제한
 - 전문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품질과 관련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 보도, 확정판결 등)를 일으킨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품 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
 - 단, 제품 출시가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주요 판매처 유통시장이 확보되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1억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제품은 증빙서류(판매처, 매출액) 제출 시 신청 가능([품목제조보고서에 등록된 제품](#))

업체 제출서류

※ 반드시 순차별로 취합 작성 후 제출

- ①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신청서 【서식1】 * 한 항목이라도 누락 시 탈락처리
- ②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서식2】
- ③ 품질관리계획서 【서식3】
- ④ 시장·군수 추천서 【서식4】
- ⑤ 신청제품 세부 설명자료 【서식5】
- ⑥ 최근 6개월 이내의 안전성 검사결과서
 - 안전성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자가품질검사성적서
- ⑦ 신청제품의 전년도(2023) 생산량 및 판매량, 수출실적 입증 자료
 - 재무제표, 거래내역서 등
- ⑧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⑨ 제품별 품목제조보고서, 제품 상표등록증 각 1부
 - ※ [품목제조보고서에 등록된 제품만 추천 가능\(시군 필수 체크\)](#)
- ⑩ 원산지 증명서(도내 농수산물 증명)
 - ※ 연간 생산량만큼의 원료량 확인, 자체생산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첨부
- ⑪ 관련기관의 품질인증서 및 업체 홍보자료(리플릿, 특허증 등) 1부
- ⑫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 1매

2 안전성검사

- 친환경인증을 받은 1차 농산물 및 6개월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인증서 및 검사성적서 제출 시 안전성검사 생략 * '24. 6. 30.기준
- * 단, 도지사품질인증 신청제품 중 동일한 검사항목의 적용을 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여러 제품 중 대표 제품 한개)로 실시하므로, 식품유형별로 대표 제품의 6개월이내의 검사성적서 제출 시 안전성검사 생략
- * 화훼류의 경우 관상용은 안전성검사 불필요, 식용은 안전성검사 필수

3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 제출서류 : 업체 신청서류 12종(원본 시·군 보관, pdf 파일 제출)
 - 신청서류는 도 담당부서로 제출
 - 농산물(가공)분야 : 농식품유통과 · 수산물(가공)분야 : 수산유통가공과
 - 축산물(가공)분야 : 축산정책과 · 임산물(가공)분야 : 산림휴양과
- 도 추천 시 유의사항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등록 등 반드시 품목제조 신고된 제품만 신청
 - 지역 인지도가 높은 품목 등 판매 촉진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엄선
 - 도지사 품질인증 품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무분별한 추천 지양
 - 자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흠결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 추천
 - ※ 행정처분, 원산지 표시위반 등 반드시 확인, 심사기준(붙임4)에 따라 80점 미만 시 추천 제외
 - 시군에서 신청 시, 신청 제한, 가공공장 도내 소재 여부, 구비서류 등 검토 후 추천

4 추천서류 검토 및 현지심사(도)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시·군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밀 심사
 - 서류검토 후 적합 제품에 대해서만 현지조사 실시
 - ※ 심사기준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세부 심사기준 적용
- 현지심사
 -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 분야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와 합동 평가
 - 신청서류 기재사항 현지 확인 및 재배에서 생산, 유통, 제조, 위생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 조사
 - 현지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 제품은 통합상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5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 개최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통합상표 사용허가 여부 결정
-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 취소 및 개선방안 논의

6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

- 인증 기간 : 2025. 1. 1.~ 2027. 12. 31.(3년)
- 허가 품목은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포장재 등에 인쇄하여 도지사품질인증 품목임을 표시

7 조례 개정사항

- 도지사품질인증 받은 기존 업체 대상으로 신규제품 품목 추가 시 위원회의 심사를 현지심사로 대체하여 인증 허가
[※ 道 농식품유통과-12488\(2021. 9. 9.\)호 공문 참고](#)

□ 행정사항

시·군

- 도내 우수업체 도지사품질인증 신청토록 적극 홍보
 - 신청(신규·연장)을 희망하는 업체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 철저
-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도 추천 : '24. 9. 30.(월)까지
[※ 현지심사 일정 관계로 신청기한 경과 이후 접수 불가](#)

도 (축산정책과, 수산유통가공과, 산림휴양과)

-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분야 신청제품 인증심사(서류검토, 현지조사) 협조

- 붙임 1. 도지사품질인증 신청서류 【서식 1 ~ 5】 1부.
2. 도지사 품질인증 대상품목 1부.
3.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 1부.
4. 시군 담당자 1부.

부제 2

【서식1-1】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

구 분 (해당란에 √표기)		☐신규신청 ☐제품추가(허가번호 :) ☐농림수산물☐축산물☐가공식품류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작목반)				참여 농가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생산현황	사업장 소재지				생산·제조방법				
	사업장 규모				재배면적(ha)				
	주요 시설현황				연간 생산량(톤)				
	기계·장비현황				연간 매출액(천원)				
통합상표사용계획	품 목			연간출하량(톤)	포장단위(kg) /가격	포장재수(매)	사용기간(3년)	출 하 처	
	상품군	상품세목	상품명					국내	국외
	<예시> 12	고추장	웰빙고추장 (포장재 상품명과 동일하게 작성)	100	500g/5,000원, 5kg/45,000원	5,000	'20.7.1~'23.6.30	○○마트	미국
		된 장	홍길동된장	50	2kg/15,000원, 4kg/30,000원	100	'20.7.1~'23.6.30	○○마트	중국,일본
			품목제조보고대상과 일치하여 작성						
확인사항		부적합 판정, 원산지표시위반, 행정처분 등 해당여부						☐ 여	☐ 부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 추천서(제품추가 시 생략) 3. 6개월 이내의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 입증자료 등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6.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7. 제품별 품목제조보고서, 제품 상표등록증 8. 원산지증명서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 업체 홍보자료(제품추가 시 생략) 10. 신청업체 세부 설명자료(제품추가 시 생략) 11.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									

【서식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성명(대표자)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작목반)명 : ☐ 전 화 번 호 :
(HP :)
☐ 주 소 :

1. 위 본인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오며, 통합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3】

품질관리 계획서

1. 원재료 관리기준

-
-
-

2. 제조 및 위생관리기준

-
-
-

3. 보관 및 출고 관리 기준

-
-
-

4. 출고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유통관리) 기준

-
-
-

※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4】

추천서

☐ 법인(작목반)명 :

☐ 대표자성명 :

☐ 추천내용 :

☐ 추천사유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2024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5】

신청업체 세부 설명자료

(업체명 : , 제품명 :)

① 농림수산물

가. 생산자(조직) 자질

- 조직형태(√ 표기) : 개인(),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기타()
- 생산기간(경력) : 년 ~ 년(년)
- 작목반 · 일반의 경우 아래 작성
 - 조직구성 : 농가 수/인원 수 - 회계형태 : *공동정산제, 개별정산제 등 기재
 - 생산출하 형태 : *공동생산 공동출하, 개별생산 공동출하, 공동생산 공동출하 등

나.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 유명도(√ 표기) : 전국적(), 도내(), 당해 시·군()
- 판로지역 (√ 표기) : 전국적(), 도내(), 당해 시·군()
- 주요 납품실적 (최근 3년간)
 - 주 납품처 : , 판매량 :
- 재배상 특기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다. 생산기반 규모

- 생산·재배면적 : ha ○ 시설면적 : m²
- 재배방법 :
- 연간 생산량 : 톤(또는 kg) ○ 연간 판매액 : 백만원
- 판매가격 : 원(kg당)

라. 유통능력

- 판매비율 : 타시도(%), 도내(%), 당해 시·군(%) * 전체 100%
- 판매형태 : ①_____ (%), ②_____ (%), ③_____ (%)

* 주요 판매처 순으로 3개 작성

〈보기〉 대형마트, 백화점, 농축협, 도매시장, 직거래, 수출, 학교급식, 자체매장 등

○ 출하기간 :

○ 생산량 대비 출하율 : %

○ 현재까지 판로개척 실적 및 향후 판로개척 계획

- 구체적으로 기재

마. 생산기술 수준 (√ 표기)

○ 제품생산에 필요한 경험, 지식, 기술 보유 수준 : 우수(), 보통(), 미흡()

- 보유사항 기재

(ex- 인증명칭 : , 인증기관 : , 인증연월일 :)

바.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 생산 및 품질관리(저장, 가공, 선별 등)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및 수송수단 확보 여부

- 보유 중인 시설 기재

○ 품질 및 신선도 유지 방안

- 구체적으로 기재

사. 품질 및 사후관리 대책 : 【서식3】 품질관리 계획서

아. 마케팅 방안

○ 마케팅 지역(√ 표기) : 전국단위(), 광주·전남지역(), 미 실시()

○ 마케팅 실적

- 구체적인 실적 기재

○ 관측행사, 박람회 등 참여 실적 : 회

- 구체적인 참여 실적 기재

○ 향후 마케팅 계획

- 구체적으로 기재

② 축산물

가. 생산자(조직) 자질

- 조직형태(√ 표기) : 개인(),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기타()
- 생산기간(경력) : 년 ~ 년(년)
- 작목반 · 일반의 경우 아래 작성
 - 조직구성 : 농가 수/인원 수 - 회계형태 : *공동정산제, 개별정산제 등 기재
 - 생산출하 형태 : *공동생산 공동출하, 개별생산 공동출하, 공동생산 공동출하 등

나.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

- 유명도(√ 표기) : 전국적(), 도내(), 당해 시·군()
- 판로지역 (√ 표기) : 전국적(), 도내(), 당해 시·군()
- 축산물등급 : 종류 - , 등급 -
- 주요 납품실적 (최근 3년간)
 - 주 납품처 : , 판매량 :
- 사육방법상 특기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다. 생산기반 규모

- 사육두수 : 두(또는 수) ○ 시설면적 : 동, m²
- 사육방법 :
- 연간 생산량 : 톤(또는 kg) ○ 연간 판매액 : 백만원
- 판매가격 : 원(kg당)

라. 유통능력

- 판매비율 : 타시도(%), 도내(%), 당해 시·군(%) * 전체 100%
- 판매형태 : ①_____ (%), ②_____ (%), ③_____ (%)

* 주요 판매처 순으로 3개 작성

〈보기〉 대형마트, 백화점, 농축협, 도매시장, 직거래, 수출, 학교급식, 자체매장 등

- 출하기간 :
- 생산량 대비 출하율 : %
- 현재까지 판로개척 실적 및 향후 판로개척 계획
 -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양기술 수준

-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 : 년
- 축산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기사 이상)
- 축산 관련 대학(전문대 이상 졸업) 학력 소지 여부

바. 사육시설 및 기자재

- 축종별 축사규모 : 총 두(수), 시설면적 m^2 (1두당 m^2)
- 생산 및 품질관리(저장, 가공, 선별 등)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및 수송수단 확보 여부
 - 보유 중인 시설 기재
- 품질 및 신선도 유지 방안
 - 구체적으로 기재

사. 품질 및 사후관리 【서식3】 품질관리 계획서

-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유통분야 생산이력 여부

아. 마케팅 방안

- 마케팅 지역(√표기) : 전국단위(), 광주·전남지역(), 미 실시()
- 마케팅 실적
 - 구체적인 실적 기재
-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실적 : 회
 - 구체적인 참여 실적 기재
- 향후 마케팅 계획
 - 구체적으로 기재

③ 가공식품

가. 생산자(조직) 자질

- 조직형태(√ 표기) : 개인(),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기타()
- 생산기간(경력) : 년 ~ 년(년)
- 작목반 · 일반의 경우 아래 작성
- 조직구성 : 농가 수/인원 수 - 회계형태 : *공동정산제, 개별정산제 등 기재
- 생산출하 형태 : *공동생산 공동출하, 개별생산 공동출하, 공동생산 공동출하 등

나.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 유명도(√ 표기) : 전국적(), 도내(), 당해 시·군()
- 대외신용도(√ 표기) : 매우 높음(), 높음(), 보통()
- 판로지역 (√ 표기) : 전국적(), 도내(), 당해 시·군()
- 주요 납품실적 (최근 3년간)
- － 주 납품처 : － 판매량 :
- 제품 생산 특기사항
- － 구체적으로 기재

다. 유통능력

- 판매비율 : 타시도(%), 도내(%), 당해 시·군(%) * 전체 100%
- 판매형태 : ①_____ (%), ②_____ (%), ③_____ (%)

* 주요 판매처 순으로 3개 작성

〈보기〉 대형마트, 백화점, 농축협, 도매시장, 직거래, 수출, 학교급식, 자체매장 등

- 출하기간 :
- 생산량 대비 출하율 : %
- 현재까지 판로개척 실적 및 향후 판로개척 계획
 - 구체적으로 기재

라. 도내 생산원료 사용여부

- 주원료 : ○ 원료사용량 : 톤(또는 kg)
- 원료 비율 : 국내산 %(도내 %, 타지역 %), 수입산 % (총 100%)

마.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 (√ 표기)

- 오염 우려 여부 : 안전(), 보통(), 위험()
- 자연적 재해 우려 여부 : 안전(), 보통(), 위험()

바.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 생산 및 품질관리(저장, 가공, 선별 등)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및 수송수단 확보 여부
 - 보유 중인 시설 기자재
- 품질 및 신선도 유지 방안
 - 구체적으로 기재

사.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 수준 : 【서식3】 품질관리 계획서

아.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

- 가공 및 제조시설의 단일화 여부(√ 표기) : 여(), 부()
- 업체 매출 중 인증 신청제품의 매출 비율 : %

자. 판매가격의 적정성

- 제품 판매가격 :()원(kg당)
- 타 사 유사제품과 가격 비교(√ 표기) : 높음(), 비슷(), 낮음()

차. 마케팅 방안

- 마케팅 지역(√ 표기) : 전국단위(), 광주·전남지역(), 미 실시()
- 마케팅 실적
 - 구체적인 실적 기재
-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실적 :()회
 - 구체적인 참여 실적 기재
- 향후 마케팅 계획
 - 구체적으로 기재

도지사 품질인증 대상품목(8류 27상품군)

농산물류169, 과자·당류28, 조미류34, 음료류55, 주류37, 축산·유지40, 수산110 등

제 1 류 :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다른 유에 속하지 않는 기타식물

상 품 군	상 품 세 목 (169품목)
1. 곡물·두류 (16)	① 곡물 : 쌀, 보리, 조, 기장, 밀, 옥수수, 수수, 메밀, 울무 ② 두류 : 콩, 팥, 녹두, 땅콩, 완두콩, 강낭콩, 잠두콩
2. 야채류 (66)	가지, 감자, 갓, 고구마, 고비, 고사리, 고추, 건고추, 깻잎, 냉이, 녹두나물, 당근, 더덕, 동아, 도라지, 두릅, 마, 마늘, 머위, 무, 미나리, 박, 배추, 버섯(느타리, 동충하초, 송로, 송이, 새송이, 아카리쿠스, 영지, 팽이, 표고), 방울토마토,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10월 , 상치, 생강, 시금치, 신립초, 쪽갓, 아티초크, 앤다이브,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연근, 인삼, 자소, 장뇌삼, 죽순,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 케일, 콩나물, 토란, 토마토, 파, 파슬리, 파프리카, 풋옥수수, 풋콩, 피망, 호박
3.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23)	가공인삼, 건시, 건조야채, 건포도, 과일병조림, 과일샐러드, 과일젤리, 과일통조림,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마말레이드, 무말랭이, 부각, 설탕에 절인 과일, 야채병조림, 야채샐러드, 야채통조림, 야채스프, 야채주스, 장아찌, 잼
4. 가공곡물류 (28)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식용곡분(갈분,감자,고구마,들깨,메밀,밀,보리,쌀,옥수수,울무,콩,현미), 국수, 냉면, 누룽지, 당면, 도시락밥, 라면, 두부, 두유, 맥아, 빈대떡, 샌드위치, 엿기름, 전, 초밥
5. 효모류 (5)	누룩, 메주,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6. 과실류 (23)	감, 대추, 딸기, 멜론, 모과, 무화과, 밤, 배, 버찌, 복숭아, 사과, 산머루, 살구, 석류, 수박, 앵두, 유자, 은행, 자두, 잣, 참다래, 참외, 포도
7. 식물 (8)	관목, 꽃, 나무, 모, 묘목, 분재, 생화, 선인장

제 2 류 : 과자와 당류(식용에 한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28품목)
8. 과자와 빵 (17)	강정, 건과자, 과일칩, 다식, 당과, 만두, 빵류, 산자, 야채칩, 약과자, 양갱, 엿, 유과, 전과, 한과, 편강, 호떡
9. 당류 (10)	꿀, 당밀, 과당, 로열젤리, 맥아당, 물엿, 봉밀, 분말엿, 조청, 포도당
10. 떡 (1)	떡류

제 3 류 : 조미료류(식용에 한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34품목)
11. 장류 (6)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12. 식초류 (6)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13. 양념·향신료(17)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고추씨기름, 깨소금, 냉이가루, 들깨, 마늘가루, 마늘기름, 버섯가루,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수프, 육계가루, 참깨, 카레가루, 후춧가루
14. 염 (5)	맛소금, 셀러리소금, 식품보존용소금, 요리용소금, 죽염

제 4 류 : 차와 무주정 음료

상 품 군	상 품 세 목 (55품목)
15. 차류 (34)	감귤차, 감잎차, 구기자차, 녹차, 대추차, 둥굴레차, 들깨차, 땅콩차, 매실차, 맥엽차, 머루차, 모과차, 보리차, 뽕잎차, 산수유차, 석류차, 석창포차, 솔잎차, 신선초차, 어성초차, 영지차, 오가피차, 오롱차, 오미자차, 옥수수차, 원기차, 유자차, 율무차, 인삼차, 인진쑥차, 차의잎, 호두차, 홍차, 현미차
16. 청량음료·과실음료 · 채소음료(21)	감주,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과실주스, 도라지넥타, 마늘음료, 미나리즙, 비알콜성과일넥타, 수정과, 신선초즙, 양파음료, 어성초즙, 유자음료, 인진쑥즙,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토마토주스, 채소주스, 고로쇠

제 5 류 : 주류

상 품 군	상 품 세 목 (37품목)
17. 일반주류 (7)	범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18. 양주 · 맥주 · 과실주 (16)	과실브랜드, 더덕주, 동충하초주, 딸기주, 리큐르,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알콜성과일엑기스, 위스키, 유자주, 진, 칵테일, 포도주
19. 중국주 (3)	고량주, 노주, 오가피주
20. 약미주 (11)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 어성초주, 죽엽주, 호골주, 홍주

제 6 류 : 축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지(식용에 한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40품목)
21. 식육 (1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인조육, 청둥오리고기, 칠면조고기, 꿩고기, 타조고기, 토끼고기, 삼계탕
22. 알류 (4)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23. 내장품 (12)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돈까스, 베이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 육포, 축산물병조림, 축산물통조림, 햄, 햄버거용고기, 흑염소육골죽
24. 식용유지 (10)	땅콩기름, 들기름, 마가린, 소맥유, 어유, 옥수수기름, 우지, 참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유

제 7 류 :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110품목)
25. 어개류 (88)	가리비,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개랑조개, 개조개, 갯장어, 게류, 고등어, 고막류, 꼴뚜기, 꼴치, 굴, 낙지, 넙치, 농어, 눈볼대, 능성어, 대구, 대합, 돔류, 동자개, 맛, 망둥어, 매통이, 메기류, 멸치류, 문어, 미꾸라지, 민물돔, 민어, 바지락, 방어, 백합, 밴댕이, 뱀장어, 뱀어, 병어, 보구치, 보리멸, 복어류, 불락, 부세,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고막, 새우류, 새조개, 서대, 성게, 성대, 소라, 송어, 쏘가리, 쏘뽕이, 숭어, 아귀, 양태, 연어, 연어란, 오징어류, 우렁챙이, 우럭조개, 은어, 임연수어, 잉어류, 자라, 재첩,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기류, 조피불락, 준치, 쥐치, 쭈꾸미, 청어, 코끼리조개, 학꼴치, 해삼, 향어, 홍어, 홍합
26. 해초류 (12)	감태, 김,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우무가사리, 천초, 청각, 톳, 파래, 한천
27. 가공수산물 (10)	건제어개류, 생선묵, 생선을저린조각, 성게알, 수산물병조림, 수산물통조림, 식용부레풀, 식용어분, 젓갈, 훈제어개류

제 8 류 : 1~7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농수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

통합상표사용허가 심사기준

1. 농림수산물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100점)
계		점
생산자 (조직) 자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10
	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 ~ 3년 미만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8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가.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재배방법이 차별화되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15
	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재배방법의 차별화가 인정되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12
	다. 산지유명도, 재배방법 및 대외적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생산기반 규모	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15
	◎ 농·임산물 - 쌀(미곡) : 50ha 이상, - 그 외 곡류 : 30ha 이상, - 과실류·임산류 : 10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7ha 이상, 콩나물 300m ² 이상 · 시설재배 3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2,000m ²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 : 2ha 이상, - 패류 : 6ha 이상, - 해조류 : 20ha 이상	12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농·임산물 - 쌀(미곡) : 40ha 이상, - 그 외 곡류 : 20ha 이상, - 과실류·임산류 : 5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5ha 이상, 콩나물 200m ² 이상 · 시설재배 2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000m ²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 : 1.5ha 이상, - 패류 : 5ha 이상, - 해조류 : 15ha 이상	8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농·임산물 - 쌀(미곡) : 30ha 이상, - 그 외 곡류 : 10ha 이상, - 과실류·임산류 : 3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3ha 이상, 콩나물 150m ² 이상 · 시설재배 1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500m ²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어류 : 1ha 이상, - 패류 : 3ha 이상, - 해조류 : 10ha 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유통능력	가. 생산량의 5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	10
	나. 생산량의 3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8
	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도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고, 향후 타시도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생산기술 수준	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남.	10
	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편임	8
	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보통임.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 가공, 선별, 포장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15
	나. '가'항의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	12
	다. '가'항의 기자재와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않았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품질 및 사후관리	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	15
	나.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함.	12
	다.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임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마케팅 방안	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10
	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	8
	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총 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가공, HACCP, GAP, 전통식품, 대한민국식품명인, 지리적표시, 저탄소농축산물 등

2. 축산물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100점)
계		점
생산자 (조직) 자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10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8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미만 ~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	가.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8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 계란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15
	나. 산지유명도가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75%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65%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 계란 :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12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 수립(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7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 계란 :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4
생산기반 규모	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70,000수 이상(토종닭 1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10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50,000수 이상(토종닭 1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8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30,000수 이상(토종닭 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유통능력	가. 생산량의 5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10
	나. 생산량의 3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8
	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도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고, 향후 타시도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사양기술 수준	가.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 자격증 포함)을 소지함.	15
	나.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대학(전문대 이상)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함.	12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함.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사육시설 및 기자재	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9.0㎡ 이상, 돼지(1두) 1.0㎡ 이상, 육계 24수당 2.0㎡이상】	15
	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음.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8㎡ 이상, 돼지(1두) 0.9㎡ 이상, 육계 24수당 1.5㎡이상】	12
	다.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함.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7㎡ 이상, 돼지(1두) 0.8㎡ 이상, 육계 24수당 1.0㎡이상】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품질 및 사후관리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유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	15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	12
	다.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이 되나 생산이력이 미흡한 경우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마케팅 방안	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10
	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	8
	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총 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가공, HACCP, GAP, 전통식품, 대한민국식품명인, 지리적표시, 저탄소농축산물 등

3. 가공식품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100점)
계		점
생산자 (조직) 자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건실한 업체로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10
	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건실한 업체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8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10
	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8
	다. 제품의 유명도가 해당 시·군에서 높고 및 대외적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유통능력	가. 생산량의 50%이상 타 시도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10
	나. 생산량의 30%이상 타 시도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8
	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도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도내 생산원료 사용여부	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	15
	나.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이상 ~ 100%미만 사용하는 경우	12
	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	8
	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	4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	가. 주변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10
	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8
	다.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 점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10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8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내용이 품질 및 신선 도유지에 미흡한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10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 한 경우	8
	다. 생산·출하과정의 자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	가. 인증품목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 품목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10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나, 비 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8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판매가격의 적정성	가. 제품 판매가격이 원료구입비, 인건비, 제품 포장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경우	5
	나. 제품판매가격이 다소 고가(또는 저가)이나, 가격 책정사유가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다. 제품 판매가격이 타당한 사유 없이 너무 과다(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	0
마케팅 방안	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10
	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	8
	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총 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가공, HACCP, GAP, 전통식품, 대한민국식품명인, 지리적표시, 저탄소농축산물 등

시군 담당자 연락처

시 군			소 속	연 락 처	비 고
목	포	시	농 업 정 책 과	061-270-3355	
여	수	시	농 산 물 유 통 과	061-659-4518	
순	천	시	농 식 품 유 통 과	061-749-8681	
나	주	시	농 식 품 산 업 과	061-339-7392	
광	양	시	농 식 품 유 통 과	061-797-3547	
담	양	군	농 업 유 통 과	061-380-2727	
곡	성	군	유 통 축 산 과	061-360-8392	
구	례	군	농 정 과	061-780-2379	
고	흥	군	농 업 정 책 과	061-830-6053	
보	성	군	차 원 예 유 통 과	061-850-5642	
화	순	군	농 촌 활 력 과	061-379-3686	
장	흥	군	농 산 유 통 과	061-860-5983	
강	진	군	농 정 실	061-430-3137	
해	남	군	유 통 지 원 과	061-530-5070	
영	암	군	농 축 산 유 통 과	061-470-2381	
무	안	군	농 업 정 책 과	061-450-4024	
함	평	군	농 업 정 책 실	061-320-1881	
영	광	군	축 산 식 품 과	061-350-5401	
장	성	군	농 업 유 통 과	061-390-8457	
완	도	군	농 업 축 산 과	061-550-5732	
진	도	군	농 수 산 유 통 사 업 소	061-540-1143	
신	안	군	친 환 경 농 업 과	061-240-8202	